

200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관련 제도

(재정경제부, 2007. 7.)

①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 기업이 2007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박물관·운동경기 관람 입장권 등에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그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비 지출의 확대를 유도
 -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지출의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가 인정

② 인적회사 과세특례 범위 확대

-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합명 또는 합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배당받은 주주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전문 디자인업, 광고업을 추가하여 2007년 6월 1일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인적회사가 최초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시행

-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를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폐업·사망·퇴임·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과되,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산세를 면제함.

④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 대통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⑤ 부가가치세제 지원과 합리적 개선

구 분	주 요 내 용
외국인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 및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2007년 7월부터 2008년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인터넷 통신판매업 관련 납세절차 신설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총괄등록대상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을 대행하도록 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도입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함.

⑥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시행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6월 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총 품목수의 99.2%인 12,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됨.
 - 이 중 생커피(현행세율 2%)·타이어(현행세율 8%)·칼라TV(현행세율 8%) 등 7,991개 품목(총 품목수의 61.2%)은 6월 1일부터 관세가 없어짐
 - 한편,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바나나(현행세율 30%), 파인애플(현행세율 30%)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망고(현행세율 30%)·두리언(현행세율 45%)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됨(예: 30%→24%).
- 발효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동 협정의 국내이행 절차 완료로 통보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 등 5개국이며,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현재 국내절차가 진행 중이며, 발효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

⑦ 20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제도 운용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산업 경쟁 력 지 원 강 화 (24)	기초원 자재 (7)	납사용 원유(3→0) 천연가스(3→1) <u>해로나프(3→1)</u>	일반원유(3→1) <u>나프타(3→1)</u>	LPG(3→1.5) <u>나프타(5→3)</u>
	농·축 산업 지원 (9)	결보리(사료용)(20→2) 대두(채유 또는 대두박용)(5→0.5) <u>유장과변성유장(20→4)</u> <u>브라운슈타인프알(8→4)</u>	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5/20 → 2) 대두박(18→1) <u>메니목펠리트(3→1)</u> <u>양조박(2→1)</u>	대두(18→1) 목수수(사료용)(18→0)
	중소기업 지원(6)	저밀도폴리에틸렌(65→4) 아크릴로니트릴(65→3)	고밀도폴리에틸렌(65→4) <u>코발트 분(3→2)</u>	폴리락트산(65→4) <u>상사(8→1)</u>
	첨단산업 지원(2)	전식식각기(8→25)	중착기(8→25)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12)	<u>메니목청(20→10)</u> 밀(채분용)(18→1) <u>귀금속회(2→1)</u> <u>코숴(5→3)</u>	백아(27/30→10) 목수수(가공용)(3→1.5) 유당(20→10) <u>코숴(5→3)</u>	<u>메주백(30→20)</u> <u>한로(8→5)</u> <u>원발유(5→3)</u> <u>등유(5→3)</u>
	세출불균형시정 · 기타(3)	정제당(40→35)	등의 박(8→4)	유연처리원피(5→4)
	합 계 : 39개			

- * 기존 29개, 신규 10개 등 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괄호 안의 적용세율은 2007년 실행세율 → 2007년 하반기 할당관세율임
- * 코숴는 이태릭체 글씨는 20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신규 적용품목(10개)

⑧ 심판사건 진행상황의 실시간 공개

- 심판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사건 접수에서 배정, 심판관회의(예정)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 심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함.
 - 최종 결정문 원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함.
- 심판관회의(예정)일을 심판청구인 등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공지하여 의견진술 또는 추가심리자료 제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8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임.

⑨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제도 시행

-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를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역모기지 제도 시행을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역모기지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대상자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
대상주택의 범위	①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1년 이상)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대상 ② 주택가격(공시가격) 6억원, 대출한도(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여 고가주택 제외
연금수령방식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단, 고령자의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목적(예: 의료비, 자녀결혼비 등)에 한해 일시금 허용(예: 총대출액의 30% 이내)

⑩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보험금액을 현실화
 - 수협·신협·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 대표의 공동보험 가입을 허용
 - 공동보험 가입기관의 경우 전산망 공유기관별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시중은행 수준과 유사한 농협은 20억원, 지방은행 보다 낮은 수준인 여타 기관은 10억원으로 설정
 -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으므로 보험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였음.

⑪ 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 관련 부채비율 적용시기 조정을 통한 제도 개선

- 최근 부채비율 축소 등을 통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기한(2007.6.30) 내 등록을 위해 부채비율 산정기준을 조정함.
-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분기말 대차대조표 이외에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한 부채비율 산정을 허용
- 2007년 4월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초래 등을 사전에 예방함.

⑫ 복합일관운송 환적절차 시행

- 환적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의 보세구역 반출입 절차
 -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살려 주변 국가의 수출물량을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로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반입 물품이 공항까지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환적절차를 간소화
 - 중국에서 화물을 적재한 트럭 자체를 카페리로 인천항까지 운송하고, 간단한 통관수속을 거쳐 공항까지 직접 운송하여 환적할 수 있도록 함.
 - 해상→항공 형태의 환적뿐 아니라 항공→해상, 육로→공·항만, 공·항만→육로의 다양한 형태의 환적화물에 대하여도 별도의 보세운송 신고 없이 적하목록의 제출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적용함.